#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99 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:이용우・박지혜・신장식

전진숙 • 박홍배 • 이학영

임오경 • 박지원 • 한창민

정혜경 · 전종덕 의원

(119]

## 제안이유

헌법질서수호의 중요성 및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하여지난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(7월 17일)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, 노동절(5월 1일, 법률 제13901호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)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, 교원,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노무제공자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함.

## 주요내용

- 가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헌절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(안 제2조제1호).
- 나. 노동절(법률 제13901호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근로자의 날)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(안 제2조제4호의2 신설).
다.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 도록 함(부칙 제2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9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 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국경일 중 3·1절, 광복절, 개천절 및 한글날"을 "국경일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노동절(5월 1일)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체공휴일 적용의 특례)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2조제1호의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를 적용한다. 이 경우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근로기준법」 등 관 계 법령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공휴일) 공휴일은 다음 각	제2조(공휴일)		
호와 같다.			
1. 「국경일에 관한 법률」에	1		
따른 국경일 중 3·1절, 광복	<u>국경일</u>		
절, 개천절 및 한글날			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4의2. 노동절(5월 1일)		
5. ~ 10. (생 략)	5. ~ 10. (현행과 같음)		